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36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 15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주식형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8.09.24 - 2009.09.23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SK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9.03.05	주식선물 추가 제 34 조 (투자대상)	2.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 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, 주가지수 옵션, 주식옵션, 코스닥지수선물, 코 스닥지수옵션 (이하 “ 주식관련장내파 생상품” 이라 한다)	2.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 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, 주가지수 옵션, 주식선물, 주식옵션, 코스닥지 수선물, 코스닥지수옵션 (이하 “ 주식 관련장내파생상품” 이라 한다)
2009.05.03	자동법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으로 전환	삼성 Kodex China H 상장지수투자신탁	삼성 KODEX ChinaH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]
2009.06.18	제 20 조(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) 제32조(반대 수익자의 수	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5 조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다만,	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54 조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다만,

감사인명	기간	보수	방법		감사인명	기간	보수	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55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
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 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
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
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회사인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홈페이지 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